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7일 18시 07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대상	3

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대상

2014.04.17 조회수 1298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14
담당부서	노인장애인과
상위법령	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
조례	여수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사회복지
법령공표일	완화규제
규칙	완화규제
존속기한	2013-08-14
규제시행/폐지일	2014-03-19
규제내용	제5조(입소대상)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. 65세 이상의 사람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3.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13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17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